

|       |              |
|-------|--------------|
| 의안번호  | 2125963      |
| 의 퇴 인 | 조경태의원        |
| 회 답 일 | 2023.12. 20. |
| 추계번호  | 23D4774      |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1     | 안 제2조(설치 등)             | <div>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 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구리구를 설치함</div> <table><tr><td>구의 명칭</td><td>관할구역</td></tr><tr><td>구리구</td><td>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구리시 일원</td></tr></table> | 구의 명칭 | 관할구역 | 구리구 |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구리시 일원 | 재량규정 |
| 구의 명칭 | 관할구역                    |                                                                                                                                                                        |       |      |     |                         |      |
| 구리구   |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구리시 일원 |                                                                                                                                                                        |       |      |     |                         |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조(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안 제2조)

- 개정안은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역을 서울특별시에 구리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이 변하지는 않으므로, 지방세<sup>1)</sup>와 지방교부세<sup>2)</sup>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sup>3)</sup>

- 
- 1)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특별시에 자치구로 편입되는 경우, 김포에 귀속되는 지방세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서울특별시·구리시의 지방세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참고1]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지방세수 귀속단체 변동)
  - 2) 경기도 구리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구리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등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관련 비용은 제정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임

- 개정안에 따라 구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sup>4)</sup>를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sup>5)</sup>,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의 정비, 소속 기관의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민투표의 실시여부, 주민투표의 실시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sup>6)</sup>, 현재 시점에서 정보화 시스템 정비 규모, 명칭 변경에 필요한 기관별 비용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한예슬 | 오명희 |

4)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5)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⑪ (생략)

6)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대상 범위를 구리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중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짐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한예슬 | 02-6788-4831 | yeseulhan@nabo.go.kr |

[참고 1]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지방세수 귀속단체 변동

| 구분    | 귀속   | 세목                                                                                       |
|-------|------|------------------------------------------------------------------------------------------|
| 경기도   | 도세   | 취득세, <b>등록면허세</b> ,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시·군세 | <b>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b>                                                      |
| ↓     |      |                                                                                          |
| 서울특별시 | 특별시세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b>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특별시분)<sup>1)</sup>, 자동차세, 담배소비세</b>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구세   | <b>등록면허세, 재산세(구(區)분)</b>                                                                 |

주: 1. 붉은색 음영은 현행 경기도에 귀속되었으나 구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 김포로 편입되는 세목이며, 푸른색 음영은 현행 구리시에 귀속되었으나 구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세목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에 귀속되며,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본세는 특별시의 안분과정을 거쳐 자치구에 귀속. 단,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전액 자치구에 귀속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